최근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 내용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의 제작 또는 수입 금지 예외사항에 대한 단서를 법률에 신설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적정한 계량의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법정계량제 도는, 화폐제도와 같이 경제활동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이다. 1961년 제정한 이래로 계량법은 수십 차례 전부 또는 일부 개정되어 왔다. 최근 개정된 법 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



기준을 정하여 적정한 계량을 실시하기 위한 법정계량세 도는, 화폐제도와 같이 경제활동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이다. 여기서 계량이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어떤 양의 값은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국기표준기본법 제3조, 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을 말하며 법정계량이란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 부가 법령에 따라 정하는 상거래와 증명용 계량(국가표준기보법 제3 조, 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을 말한다.

합리적인 법정계량제도의 확립으로 공정한 상겨래 질시의 유지와 산업의 선진화에 어마지하고자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상거래나 증 명에 사용되는 범정계량단위, 법정계량기와 실량표시상품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계량법은 1961년 재정한 이래로 수십 차례 전부 또는 일부 개성돼 왔다. 최근 개정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소 개한다.

1.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011.4.4, 법률 제10530호)

현행법 제5조에서는 비법정계량단위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에 대 한 별식 규정으로 제48조에서 비범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 품의 제작 또는 수입 시 1년 이하의 경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범금 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단,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나 상품의 경우 소극적 구성요진 표지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법률만의 해석을 통해서는 여를 예측할 수 없 으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여름 시청하기 위해. 비법장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의 제작 또는 수임 급지 예 외사항에 대한 단서를 법률에 신설했다.

그 예외사항으로 수출물품 또는 수출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계 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신박ㆍ항공기 또는 군용물품의 계량에 사용 하는 계량기, 연구ㆍ개발에 이용되는 물품의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 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계량기나 상품, 수출품의 원료 또는 부품 으로서 수입하는 상품 등으로 규정하였다.(제5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또한,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 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의해하기 쉽게 장비하였다.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을 차등화

2.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 2011.4.6, 대통령령 제22887호)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형식승 인의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의료기기 법」에 따라 제조 · 수입품목 혀가를 받 은 혈압계와 체온계에 대해서는 형식승 인을 면제하였다. 또한 주유가 등의 감 정 유효기간을 완화하고, 계량기의 재 검정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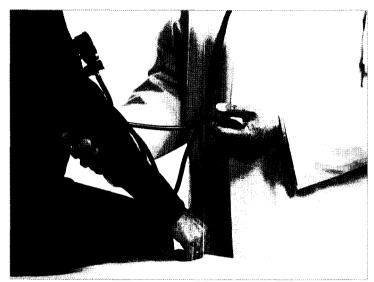
한편,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여기 위하여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위반행염의 정 도, 동기와 절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정하거나 가중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성하는 등 현행제도 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미점을 개선 · 보완하였다.

1) 계량기 형식승인의 유효기간 폐지 (제17조)

계량기의 형식이 변경되지 않아도 10 년마다 형식승인을 발도록 하는 문제점 이 있어. 계량기 형식승인을 10년마다 다시 민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계 량기 제작업자와 수입업자의 재형식승 인에 따른 불편과 비용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형식승인의 면제 대상 추가(제18조)

혈압세와 체온계는 계량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형식승인과 「의료기기법」에 따 른 제조·수업품목 허가를 중목적으로 받는 문제가 있어. 중복되는 경우 형식



▲ 「의료기기법」에 따라 제조·수입품목 허기를 받은 혈압계와 체온계에 대해서는 형식승인을 먼 제하였다.

승인을 면제하여 혈압계와 체온계 제작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3) 형식승인 대상 계량기의 범위 조정(제17조 제1항 관련 별표 9)

스푼저울, 체중계 등 상거래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계량기에 대해서 도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는 문제점이 있어, 저울 자체 또는 병판에 가정용·교육용 또는 참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계량기는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4) 주유기와 LPG 미터의 검정 유효기간 완화(제21조 제1항 관련 별 표 13)

주유기와 LPG 미터의 기술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주유기와 LPG 미터에 대한 검정 유효기간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주유소를 경영하는 자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였다. 이는 2011년 7월 1일 최초로 검정을 받는 것부터 적용된다.

5)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제33조 관련 별표 17)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4차회의(2011.1.19)에 보고된 과태료 · 과징금 합리화 방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에 위반횟수를 도입하고 부과금액을 차등화하였으며 감경기준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정기검 사 미칠시에 따른 과태료가 계량기 종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계량기 종류별로 차등화하였다.

▲수수료를 정할 때 국민의견 수렴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 정 2011.1.13, 지식경제부령 제166 호)

형식승인기준이 없는 경우 기술전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로운 형식승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계량기 제 작업과 수리업의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계량기 수리업자도 검정기관으로 부터 검정을 받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 히 하였다. 또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남을 봉인재료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 며, 수수료를 결정할 때에 이해관계인 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다.

계량증명업 등록 시 기술인력현황 제출 규정 삭제 등(제3조 제1항 제4호 삭제 제3조 제2항, 제14조 제2항)

계량증명업 등록 신청 시 '계량증명을 담당하는 기술인력현황'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자격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도에서 계량증명업 등록 시 기술인력의 법위에 대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3조 제1항 제4 호의 '계량증명을 담당하는 기술인력 현황' 제출 규정을 삭제하고, 확인서류 를 '등기부 등록'에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로 변경하였으며, 공시성 정보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생략하는 등 전자정 부법 개정 내용을 법령에 반영하였다.

2) 계량기 제작업·수리업 등의 등록 시 검사설비기준 완화와 계량실 면적 규정 삭제(제4조 제3항 삭제, 제4조 제1항 별표 1, 제4조 제2 항과 제8조 제1항 별표 2)

국무총리실 사회규제관리관실의 규제 완화방침에 따라, 영업장 규모 규정 폐지 요청사항을 반영하고 계량가 제작업 · 수리업 등의 등록 시 갖추어야 할 검사설비를 제작 · 수리능력에 따라 갖추도록 규정하여 제작업 · 수리업 등록 시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또한 제량기 기술개발과 형식증인기준 개정에 따른 제작업 · 수리업 등록 시갖추어야 할 검사설비 종류를 삭제 또는 추가하였으며, 수도미터, 가스미터, 적산열량계 등의 일부 품목에 대하여 제작 · 수리능력에 맞게 오차검사장치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였다.

3) 새로운 형식승인기준 적용(제11조의 2부터 제11조의 3 신설)

첩단기술 등의 신제품 개발에도 불구하고 형식승인기준이 없어 기업의 시상 진출에 애로가 발생함에 따라, 형식승인기준을 신속하제 : 개정하거나,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인증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기반을 마련하였다. 즉 개량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새로운 형식승인기준의 제정이나 개정을 신청할 수 있고, 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형식승인기준의 제 · 개정 추진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다.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가치 새로운 형식승인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과 형식승인기관에게 통지하고, 형식승인기관은 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새로운 형식승인기준을 적용해 형식승인을 하게 하였다.

4) 수리업자의 계량기 검정의무 명확회(제17조와 제19조)

수리한 제량기도 계량기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검정기관에서 검정기준에 따라 구조와 오차 등을 확인한 후 검정증인과 봉인을 표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나, 수리임자가 계량기를 수리한 경우 검정을 받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수리엄자가 지 · 도지자로부터 수시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검정기관으로부터 검정을 받아야 하는지 불분명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수리업자가 계량기를 수리한 경우에는 검정기관에게 검정을 신청하여 감정을 받도록 하되, 계량기가 형식승인을 받은 구조와 다르게 수리된 경우에는 수리한 계량기의 성능이 수리 전의 성능과 동인한지에 대한 인정을 지작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계량기 감정 대상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였다. 동 개정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5) 계량기 수수료 산정의 투명화(제41 조 제1항, 제42조의 2 신설)

범제처의 국민물편법링계폐사업과 관련하여 「급전납부제도의 합리화 방안」에 따른 수수료의 결정절차를 개별 법령에 규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여 계량가 형식증인 등의 수수료를 정할때 국민의 의건수렴을 거쳐 실비의 법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그 결정내용과실비 산정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6) 봉인재료에 납 사용 금지 등(제25조 별표 5)

계량기를 점점한 후 조작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봉인의 재료가 주로 납을 사용하고 있어, 납은 인체에 유해하고 환 경오염 등을 발생시키는 중금속으로 전 세계적으로 규제하고 있음에 따라, 계 량기의 봉안재료로 납의 사용을 금지하 였다. 또한 점정증인의 종류를 종전의 압인, 사출인 외에 화인, 습부인, 부식 인을 추가하여 계량기 검성증인 표시의 편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동 개정 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 된다

